〈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u>가맹계약을 체결</u>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u>본 서류가</u> <u>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u>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



등 록 번 호	20210950	
최초 등록일	2021.04.01	-
최종 등록일	2023.06.20	jycorporation99@gmail.com

준식당 정보공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2. .

주식회사 영웅에프앤비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 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산자로34길 70, C동 5층 512호

■소 재 지: 「음식을 다 등 대문 다 프로 다 등 대문 다 프로 다 를 다 되었다.
(용두동, 청량리역 해링턴플레이스)

■대표전화번호: 02-2068-1218 __ ;; ■ 대표 e - m a i l : jycorporation99@gmail.com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 2. 특수 관계인의 일반 정보
-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 5. 가맹본부의 재무현황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 7. 가맹본부의 임직원 수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 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1. 가맹사업시작일
- 2. 가맹사업 연혁
- 3. 바로 전 3개년도 말 가맹점 및 직영점 현황
- 4. 바로 전 3개년도 말 가맹점 및 직영점 현황
- 5. 기타 가맹사업 현황
- 6. 가맹점사업자당 연간 평균 매출액 및 그 산정기준
- 7.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현황
-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 9. 광고·판촉지출 내역
- 10. 가맹금 예치기관
- 11. 가맹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내역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1.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 3. 형(形)의 선고

IV. 가맹사업자의 부담

-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 2. 영업 중의 부담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1. 물품 구입 및 임차
-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 5. 가맹본부의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9. 광고 및 판촉 활동
-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VI. 가맹사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Ⅷ.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 3. 경영활동 자문
- 4. 신용 제공 등 내역
-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VⅢ.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 2.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 3. 교육 · 훈련의 주체
- 4. 교육 · 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 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에 등록한 정보공개 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 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 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 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 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 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3.11Fb 0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산자로34길 70, C동
	正当	준식당 외2		량리역해링턴플레이스)
주식회사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 등 록 일	대표	전화번호
영웅에프앤비	2020년 12월 9일	2020년 12월 18일	김준영	02-2068-1218
	법인등록번호	134111-0568127	사업자등 <mark>록</mark> 번호	772-86-01791

2. 특수 관계인의 일반 정보

∘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선유로3길 10), 609-1호			
대표이사	김준영	준식당 외2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준영	02-2068-1218	-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선유로3길 10), 609-1호		
사내이사	김주아	준식당 외2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준영	02-2068-1218	-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있습니다.

인수합병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주식회사	백운축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가맹사업 인수	제이제이	소한마리정육식당	2023.10.27	고봉로 32-36, 101, 107	김주아
기정사합 친구	코퍼레이션	고인미디영퓩역당		(장항동, 정안프라자)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 · · · · · · · · · · · · · · · · · · ·
상 호	준식당 00 점	없 음
상표(서비스표)	(BI)	등록번호 -
	제대로 대접하는 고깃집	드로버충
	준식당	등록번호 4018280970000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3년	215,502,044	133,405,533	82,096,511	1,761,760,563	57,981,354	55,920,369
2022년	190,776,869	204,600,727	-13,823,858	577,240,880	3,273,708	3,143,605
2021년	34,794,619	51,762,082	-16,967,463	8,500,371	-23,299,090	-23,295,019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당사는 각 영업표지 별로 분류하기 어려워 합계를 기재 하였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려서 ㅂ	OL 클	현 직위		사업경력	
관련여부	이름	연 작귀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김준영	대표이사	2020년 12월 9일~	대표이사	사업총괄
가맹사업 관련임원	김주아	사내이사	2020년 12월 9일~	사내이사	사업총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134	임원-	수(명)	지의人(며)
시점	상근	비상근	직원수(명)
2023년 12월 31일	2	-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 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정보공개 바로 전 3년 동안 『준식당』 가맹사업 외의 동일하거나 비슷한 가맹사업 다음과 같이 경영한 적이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백운축산 소한마리 정육식당
			2021.1.1. ~ 현재	(등록번호: 20231541)라는
가맹본부	- 주식회사 영웅에프앤비	가맹사업 운영		영업표지 가맹사업 운영
기정군구	구극되시 66에드랜미	구극되자 68에드랜티 기6시티 단6		미스터프랭키리페어샵
			가맹사업 경영 예정	(등록번호: 20230306)라는
				영업표지 가맹사업 운영

-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 귀하가 당사의 『준식당』 가맹점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귀하에게 부여하는 지식재산 권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 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준식당	간판, 인테리어 시설물 및 판촉. 홍보활동	등록일자 2022. 02. 03	등록번호 4018280970000	김준영	2032. 02. 03 (2032. 02. 03)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田.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가맹사업 시작일 : 2021. 01. 01

2. 가맹사업 연혁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식회사 영웅에프앤비	준식당	김준영	2021.01.01. ~ 2023.06.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3길 10, 609-1호
주식회사 영웅에프앤비	준식당	김준영	2023.06.28. ~ 현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산자로34 길 70, C동 5층 512호(용두동, 청 량리역 해링턴플레이스)

3. 가맹사업 업종

영업표지	업종		
Z.115h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준식당	한식	돼지고기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TICH		2021.12.31			2022.12.31			2023.12.31	
지역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4	4	-	4	4	-	1	1	-
서울	-	-	-	-	-	-	-	-	_
부산	-	-	-	-	-	-	-	-	_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_	-	-	_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4	4	-	4	4	-	1	1	-
강원	-	-	-	-	-	-	-	-	-
충북	-	-	-	-	_	-	-	_	-
충남	-	-	-	-	-	-	-	_	-
전북	-	-	-	-	-	-	-	_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5. 바로 전 3개년도 말 『준식당』 의 가맹점수 변동 현황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말
2023	4	-	_	3	-	1
2022	4	-	-	_	-	4
2021	-	4	-	-	-	4

6. 기타 가맹사업 현황

• 당사는 해당 가맹사업 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 맹사업 바로 전 3개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78	ᄮᅕᄵᇋ	MOI TI	정보공개서	어조	기맹점/직영점의 수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등록번호	업종	2021.12.31.	2022.12.31.	2023.12.31.	
가맹본부	주식회사 영웅에프앤비	백운축산 소한마리 정육식당	20231541	한식	-	-	5/0	
가맹본부	주식회사 영웅에프앤비	미스터프랭키리페어샵	20230306	한식	-	-	-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 · · · · · · · · · · · · · · · · · ·									
			2023년 기	 맹점사업지	·의 연간 평	균 매출액				
지역	2023년 말				평균 (상한)		평균 ¦(하한)	비고		
	기맹점수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당	상한	면적 3.3㎡당	하한	면적 3.3㎡당			
전체	1	해당없음	-	-	-	-	-	산정 불가		
서울	-	_	-	_	_	ı	_	-		
부산	-	_	-	_	_	_	_	-		
대구	-	_	_	_	_	-	_	-		
인천	-	-	-	_	_	_	_	-		
광주	-	_	-	_	_	-	_	-		
대전	-	_	-	_	_	-	_	-		
울산	-	-	_	_	_	_	_	-		
세종	-	-	-	-	-	_	_	-		
경기	1	해당없음	-	-	-	_	_	5 곳 미만		
강원	-	-	-	-	-	-	-	-		
충북	-	-	-	-	-	-	-	-		
충남	-	-	-	-	-	-	-	-		
전북	-	-	-	-	-	-	-	-		
전남	-	-	-	-	-	-	-	-		
경북	-	-	-	-	-	-	-	-		
경남	-	-	-	-	-	-	-	-		
제주	_	_	-	_	_	-	_	-		

[•] 당사는 특정 가맹점 매출이 그대로 노출되는점을 우려하여 매출액 산정이 어렴움을 안 내드립니다.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 『준식당』 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 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1개	1005일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 ∘ 당사는 『준식당』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 당사에서 바로 전 사업 년도에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 및 판촉비를 가맹점 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본 정보공개서의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의 8. 광고 및 판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 본 부	가맹점	
광고 및 판촉	비공개	비공개	-	-	-	비공개

11. 가맹금 예치

∘ 당사의 경우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고,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과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보험인(보험회사)	서울보증보험	-
보험계약자	주식회사 영웅에프앤비	가맹본부
피보험인(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
보험기간	가맹금 예치기간(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가맹점사업자 영업 개시일까지)	-
보험금액	예치금액	_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 불이행	-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가맹본부 경유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 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평균 ()개월 소요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1. 공정거래위원회의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 ∘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바로 전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u>시정조치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u>
-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
 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 3. 형(刑)의 선고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 귀하가 『준식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계약이행)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16,500]	-	-	_	_
가맹비	11,000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가맹점 영업 개시를 위해 소요된 실제 비용	-
교육비	5,500	교육 예정일 7일 전	교육 예정 1일 이전까지 계약 해지	-	교육 시작 후 반환되지 않음

2) 보증금의 세부 내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비용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계약이행 보증금	5,000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계속가맹금 및 계약종료후의 조치 등의 대금과 관련한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액의 미지급	1.계약종료 시 잔존 채무액을 공제한 후 상호, 서비스표등 당 가맹사업과 관련된 영업표지의 철거가 완료된 후 정산함을 원칙으로 함 2.별도의 이자가 없음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 (단위: 천원)	비고
	가맹비	11,000	부가세 포함
최초 가맹금	교육비	5,500	부가세 포함
	계약이행보증금	5,000	부가세 없음
	합계	21,500	

4) 귀하가 그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별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액	면적	지급		
구분	지급대상	40평 (132㎡)	3.3㎡당 금액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	[115,300]	2,882	_	-	*현장 실측에 따라 금액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실내)	미지정	79,200 (점포 상황에 따라 변동)	1,980	별도 계약	공사착수 전 계약취소	내부공사
주방설비 및 집기류	미지정	24,000 (점포 상황에 따라 변동)	-	별도 계약	공사착수 전 계약취소	
간판	미지정	6,600 (점포 상황에 따라 변동)	_	별도 계약	공사착수 전 계약취소	점포 실정에
초도물량 (비품 등)	미지정	5,500 (점포 상황에 따라 변동)	-	별도 계약	물품발주 전 계약취소	따라 변동
POS 설비	미지정	점포상황에 따라 변동	-	별도 계약	물품발주 전 계약취소	

* 위 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운영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수 있으며 매장규모 및 물가인상, 디자인의 변동 등 사정에 따라 금액이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허가, 인터넷 및 전화개설, 기존 시설물 철거 및 정화조공사, 전면유리 및 샤시공사, 어닝, 소방공사, 전기증설공사, 상하수도공사, 가스공사, 전기승압공사, 화장실 등은 별도로 실비를추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 위 표에 기재된 비용 중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거래할 경우 가맹본부에 추가로 비용을 지불(예: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인테리어 공사 관련, 당사의 디자인 및 설계에 대한 노하우 전수의 대가로 3.3㎡(1평) 기준으로 일금 삼십삼만원(₩330,000원, 부가세 포함)을 내부 인테리어 공사 완료후 3일 이내에 당사에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단, 인테리어 공사 등에 대해서는 당사가 직접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준식당』

영업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당사가 규정하는 콘셉트를 기준으로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선정 주체	선정 기준
	1) 가맹점 사업자가 점포 위치를 선정하여 오는 경우 기존 가맹점에 대한 영업지역권 침해 여부 등을 고려한 후 신규 가맹점의 위치를 허가함. 만약 조건에 맞지 않으면 입지 변경 권유함
가맹 희망자	2) 가맹점 사업자가 점포 입지 선정을 요청하는 경우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현장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 → 가맹 희망자의 최종 결정
	3) 가맹본부가 점포입지를 선정해 놓은 경우 가맹희망자에게 점포입지 안내 → 가맹희망자와 담당자가 현장 확인 → 가맹 희망자의 최종결정

- 당사는 가맹희망자의 판단과 책임 하에 가맹점의 입지에 대해 조언을 하며, 입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가맹점사업자가 합니다. 이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직원에게 가맹점 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책임이 없습니다.
- 가맹희망자는 본인의 책임과 권한으로 가맹점 입지(제3자와 체결한 점포, 장비, 동산의 매매 및임대차계약 등)를 선정하였으므로 입지선정이 지연되어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귀하가 부담합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자격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 만 20세 이상일 것 - 위생교육 수료자, 보건증 소지자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 만 18세 이상일 것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 보건증 소지자일 것

귀하는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가맹점운영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적발될 경우, 관할 관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 『준식당』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 물품의 상세 내역은 첨부한 물품리스트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물품내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 할 수 있으며 거래상대방을 추가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 영업 중의 부담
 - 1) 비용 부담
-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가맹본부	매월 POS 총매출액(부 가세 포함) 기준 2.2%	익월 10일	후불로 반환 없음	-	가맹점의 월매출산정은 1일~말일
광고 분담금	가맹본부	광고별로 분담	추후협의	미 시행 시 반환	광고시행 후	정보공개서 p.46 참고
판촉 분담금	가맹본부	행사별로 분담	추후협의	미 시행 시 반환	판촉시행 후	정보공개서 p.46 참고
점포환경 개선비용	가맹본부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없음	-	VI.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참조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가맹본부	필요시 협의	설치 전 100%	&	-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수시 및 정기 교육비	가맹본부	필요시 협의	교육개시 전일 완납	없음	-	교육 필요시 지급
특별 교육비(파견)	가맹본부	교육에 따라 다름	교육개시 전일 완납	없음	-	교육 필요시 지급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가맹본부	협의	교체.보수 후 5일 이내	없음	-	교체.보수 필요시 시설, 기기 등의 내구연수 등을 감안하여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12%	지급기일 의 다음날부 터 지급하는 날까지	양	-	일체의 금전 지급 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부담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가

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23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관리 및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협의	-	-	-	-
재가맹비	5,500	계약만료 1개월 전	반환되지 않음	계약금 성격의 금전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계약에 한합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당사가 대체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 할 경우에는 가맹점 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계약에 한합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이행기간, 계약해지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계약에 한합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 승인을 얻어 가맹점 운영권이 양도되는 경우 그 양수인(이하'양수인'라한다)은 '가맹점사업자'의 본 계약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며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위하여 요구되는 교육비 및 보증금 금 천오십만(10,500,000)원(부가세 포함)을 '가맹본부'에게 지불하여야 합니다. 단, '양수인'이 요청하는 경우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완전한 계약기간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양수인'은 최초 가맹금을 '가맹본부'에게 지불하여야 합니다.
-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상속인이 영업을 상속할 경우에는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상속인이 미성년 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맹본부'는 영업의 상속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맹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인에 대해서는 가맹비가 면제됩니다. 단, 교육비는 면제되지 아니하므로 금 오백오십만 (5,500,000)원(부가세 포함)을 '가맹본부'에게 지불하여야 합니다.
- 또한, 귀하는 원활한 양도양수를 위하여 양수인에게 당사의 제도, 규약, 금전적 지급의무 등을 설명하는 등 최대한 협조해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가맹점 사업자는 계약해지일 또는 종료일부터 7일 이내 당사에 대한 채무전액을 당사에게 지급 하여야 합니다. 위 채무상환이 지연되는 경우에 가맹점 사업자는 위 지급일의 다음날로부터 변제 일 까지 연체된 채무액의 연 12%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당사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은 『준식당』 가맹사업과 관련된 영업표지 등의 사용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하며, 사용허가를 얻어 사용하던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계약해지 및 종료 후 7일 이내 철거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맹점운영에 관한 관계서류와 지원품목 등을 반환 또는 폐기하여야 합니다. 이때 철거 비용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가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종료되는 경우 외에는 귀하께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철거•원상회복의무를 지체한 경우에는 당사가 직접 철거•원상회복을 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우선 정산하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등은 반품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하자 이외의 사유로 반품이 진행될 경우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물류 공급업체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반품 상품의 상태를 감안하여 합리적인 선에서 반품금액을 차감한 후 반품하며, 이에 소요되는 배송비용 등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준식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부동산 · 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귀하는 당사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강제/권유 기준에 따라 영업에 필요한 물품 및 상품을 공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ㆍ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준식당』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 、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수 취하는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준식당』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 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추구 해당 내역 발생 시정보공개서 변경신고를 통해 공개하겠습니다.
- 2) 당사가 『준식당』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 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오미리삼겹살		* 1회 위반 :	
통삼겹살	① 당사가 제공한 조리기준에 따	서면시정요구	
살치 꽃목 살	르며 본사 영업표지가 부착된		
항정살	패키지 및 그릇/플레이팅에 제	* 2회 위반 :	
 가브리살	공할 것	서면시정요구	
육회			당사로부터
묵은지뚝배기	②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 2회 시정요구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
 차 돌 된장찌개	판매할 수 없음	도 불구하고 시	8+415 414
차돌된장찌개(소)		정되지 않는 경	
생면 생면	③ 판매를 원할 경우 본사와 협의	우 최초 시정요 구한 날부터 2개	
후식냉면	후 서면 동의를 받을 것	월 후에 계약 해	
뚝배기치즈밥		지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전 상품의 주재료(가맹본부 영업표지 부착상품)는 가맹본부에서 협의된 사항들로 사용하고 부재료
 료 또한 가맹본부에서 개발된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조리 시 표준화된 조리법을 사용, 동일한 품질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준식당의 타 가맹점			-1회 위반 : 서면 시정요구 -2회 위반 : 서면 시정요구	
당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	주류, 육류, 완조리 메뉴 전체	거래상대방별로 기재된 상품은 판매할 수 없음	-2회 위한 시한 시청표구 -2회 시정요구에도 불구하 고 시정되지 않는 경우 최 초 시정요구한 날부터 2개	
제 3자 유통업체			월 후에 계약해지 월 후에 계약해지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 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 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 당사는 시장상황이나 소비자의 동향 또는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소비자판매가를 정하여 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오미리삼겹살	12,000 (150g)	분기별 홈페이지 공지	2023년 3월 기준
통삼겹살	14,000 (150g)	n,	"
살치 꽃목 살	15,000 (150g)	n,	"
항정살	15,000 (150g)	n,	"
 가브리살	15,000 (150g)	n	"
육회	25,000 (200g)	n	"
묵은지뚝배기	7,000	n	"
<u></u> 차돌된장찌개	7,000	n	"
차돌된장찌개(소)	2,000	n	"
냉면	6,000	n	"
후식냉면	3,000	"	"
뚝배기치즈밥	4,000	n	"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권장 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및 합의하여야 합니다.

4.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 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이하 어ブ 배이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동일한 업종 범위	가맹 본 부	계열회사
돼지고기 전문 가맹사업	준식당,	없음
	미스터프랭키리페어샵	

2) 영업지역 설정기준

•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가맹본부 영업지역 설정 기준에 따라 별첨 작성	
단, 특수상권(백화점, 쇼핑몰, 마트, 시장, 역사, 지하상가, 공항,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병원, 관공서, 호텔, 리조트 등)은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귀하의 영업지역에서 제외됨. 특수상권은 계약체결 당시 존재하는 특수상권을 비롯하여 계약 기간 중에 신설되는 특수상권도 귀하의 영업지역에서 제외됨. 만일 귀하의 매장이 특수상권에 위치하는 경우 귀하의 영업지역은 해당 특수상권 내로 한정함.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 '특수상권'이라 함은 백화점, 대형마트, 종합쇼핑몰, 지하상가, 대학, 기차역, 터미널, 경기 장, 휴게소, 종합병원, 놀이공원 등에 상응하는 별도의 독립 상권을 의미합니다.
 -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기관 입주, 아파트 입주 등 대규모 개발로 인한 상 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 변화 등으로 수요가 현저하게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 사 담당팀 검토 → 영업 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 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신규 점포 입점 가 능)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지역 재조정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 동안 기존 영업지역 내에서 당사의 직영점이나 다른 가맹점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영업지역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영업지역 변경(재조정)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거나 동의여부에 대한 회신이 없는 경우, 당사는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변경하고 직영점이나 다른 가맹점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에게 배달 등을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준식당』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 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당사는 『준식당』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 ⋅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구분	영업표지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가맹점	미스터프랭키리페어샵, 백운축산 소한마리 정육식당	돼지고기	유사업종

-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 ·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 7) 그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국내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100%	-	_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100%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 『준식당』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5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 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 (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 →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아니오 →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 →A	D-180 ~ D-90
4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 아니오 →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 아니오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 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 아니오 →D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 기하였습니까?	예→B , 아니오 →®	D-180 ~ D-90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 아니오 →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D. 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전 E. 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 상의 가맹금 및 협력업체 채무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가맹계약서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12조 4항 각 1호
·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 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 · 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와 피성년 후견인·피한정 후견인 심판을 받은 경우	35조 1항
·가맹점 건물의 멸실 및 사용권 상실의 경우	35조 1항
· 가맹본부'의 조사 또는 실사의 목적으로 가맹점을 방문하여 조사 또는 실사함에 있어 '가맹점사업자'가 불응하는 경우	35 조 1 항
· 가맹점사업자'가 제21조의 이행을 완벽하게 이행하지 않아 개점이 3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이에 따른 금전 채무지급에 관하여 별도 약정한 날짜를 지키지 않을 경우	35 조 1 항
· '가맹점사업자'가 계속가맹금(Running Royalty) (제18조 제3항)의 채무를 90일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않을 경우	35 조 1 항
· 가맹점사업자'가 상품대금지불 (제23조 제3항)의 채무를 90일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않을 경우	35 조 1 항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 비밀의무를 위반한 경우	35 조 1 항
· '가맹점사업자'가 공중 위생법 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35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35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훼손 및 변경, 양도, 영업상 신뢰 훼손 (제9조 제4항, 제8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5 조 1 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제6조)를 위반한 경우	35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제18조를 위반하여 가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물품 등의 주문 및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35 조 1 항
· 가맹점사업자'가 채무액의 증가 등으로 인한 추가 보증금의 요구(제19조 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보고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35 조 1 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분담하는 판촉 및 홍보비용 (제30조 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영업비밀유지 의무 및 경업금지의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35 조 1 항
· 가맹점사업자'가 상품 공급 및 영업지원의 중단 (제25조 제1항) 각 호의 위반이 있는 경우 규제 및 지도에 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35 조 1 항
· 기타 신의칙에 반하여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영업의 양도 규정을 위반한 경우	35조 1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제35조 2항)

-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 과태료 등 부과처분
 -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 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 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와 귀하의 서면합의를 거쳐 계약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15일 이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	내에 동의 여부 회신 →
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완료	효력발생

-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 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 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가맹본부 (02-2068-1218)

-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운영에 관한 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하며, 교육훈련에 대한 비용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

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 양수인에게 양도한 가맹점사업자는 양수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와 계약한 영업지역 내에서 본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에게만 주어집니다. 따라서 상속을 제외한 대리행사 및 위탁 등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에게 가맹점운영권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탁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 시	모든 권리의무	양도 절차와 동일	- 교육훈련에 관한 이수 - 교육훈련비용 납부
대리행사	본부 승인 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내의 권리의무	서면통지 및 승인	- 교육훈련에 관한 이수 - 교육훈련비용 납부
업무위탁	불가능	-	-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 당사는 가맹계약의 존속 기간과 계약 종료 후 1년간 동일한 영업지역에서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자기(특수 관계인 포함)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가맹본부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준식당』과 동일한 컨셉 및 노하우를 사용하는 돼지고기 전문점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가맹본부 (02-2068-1218)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 당사는 『준식당』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 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1:00 ~ 24:00 (단, 매출활성화를 위해 마감시간은 별도 운영방침에 따라 결정)	매주 6일 이상, 월 25일 이상 (2월의 경우 24일 이상)	문의: 가맹본부 (02-2068-1218)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

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규정상 7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중단할 경우 물품공급을 중단하는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의 제한에 있어서 가맹점 및 지역 특성에 따라 그 운영방식이 상이하기 때문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권장 종업원 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1명 이상	직접 근무	당사로부터 승인을	가맹점사업자가 매장에 근무하도록
[132㎡ 기준]	권장	받은 자	권장하고 있음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감독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 당사는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필요 시 비정기적으로 관리·감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점검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로 공지됩니다.
-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맹점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가맹

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 및 영업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는 당사 또는 당사에서 지정하는 자가 상기 사항 점검이나 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영업시간 중에 자신의 가맹점에 방문하는 것을 허락하여야 합니다.

8.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 당사는 『준식당』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7 H	717 47	부담	비율	HEL 7451	–	
구분	광고 성격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분담 절차	비고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대중매체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광고 계획 공고 → 가 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전국	
	가맹점 모집광고	광고비의 100%	없음		행사)	
판촉 행사	전체행사	행사에 [©] (가맹본부와 가맹점 원	사업자측간 균등분담	행사계획 공고 → 가 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시행 → 종료 후 최종분담금 확정	거친 후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개별행사	없음	판촉비의 100%	가맹본부 사전승인	단독행사	

-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사업
 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 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 가맹본부는 사업연도 중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일부라도 부담한 광고를 시행한 경우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에 실시한 광고(해당 사업연도에 일부라도 비용이 집행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 명칭, 내용 및 실시기간, 광고를 위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광고로 집행한 비용 및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 총액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판촉활동 등을 위한 팜플렛, 카다로그, 쿠폰 등의 내용은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당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광고·판촉비용의 소모적인 낭비를 줄이고 다른 가맹점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당사와 사전 협의 하에 시행하여야 합니다.

9.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 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 서류의 내용을 인쇄, 복사, 대여, 공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당사의 영업 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 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가맹계약서 제46조 및 다음과 같습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의 의무 제41조를 위반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위약금 조로 각 사유에 대하여 금 이천만(20,000,000)원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의 종료일로부터 원상회복(제38조)에서 규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손해배상 외 1일당 금 이십만(200,000)원의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가맹본부'는 이에 대한 채권 채무의 관계를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정산하고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손해비용은 법무비용을 포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뚜렷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가맹점사업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과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의 훼손 및 타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뚜렷한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가맹점 오픈 절차

•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5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 홈페이지 및 직접방문	D-45		
1차 상담	- 전화 상담 및 본사방문 상담 -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D-44		
점포 개발	- 점포입지 선정			
가맹계약 체결	- 가맹 계약 체결 - 가맹금 예치 및 보증보험 발행	D-29	N.가맹점사업자 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점포실측/설계	- 매장 내.외부 중심선 기준 실측 / 평수 계산(소수점 첫째자리)	D-28	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면 작성 및 인테리어공사	_ , _ _ , ,			
교육 - 교육(개점전 교육)		D-17~2		
소품 및 - 기자재 및 소품 설치 초도물품 - 초도물품공급		D-1~2		
오픈	- 영업 시작	D-day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ㆍ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²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³	지급절차 ^④	비용부담 제외사유 ^⑤	비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 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 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 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 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 비용(장비·집기 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 축공사에 소요 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 사업의 통일성 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 가 추가 공사 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 환경개선 : 40%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 (공사계약서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	○점포환경개선 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 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본 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비례 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 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이미 지급한	

	의 범위내에서	는 환수 가능	
	분할지급 가능)		
	ㅇ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		
	정한 자를 통		
	하여 점포환경		
	개선을 한 경		
	우에는 점포환		
	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		
	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		
	차>		
	o 가맹점사업자		
	의 비용 청구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		
	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		
	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		
	부터 90일 이		
	내, 총 부담액		
	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		
	부터 60일 이		
	내, 총 부담액		
	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		
	부터 60일 이		
	내, 총 부담액		
	의 40%)		
	'		
			İ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 기간	지원 금액	비고
개점지원	가맹점 오픈 시 판촉인원 파견	가맹점의 매장면적, 예상매출액에 따라 판촉인원 수 차등 지원	오픈일로 부터 2일간	-	변동 가능

3. 경영활동 자문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 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 부담	비고
가맹 본부 필요시	계약이행, 표준화, 판촉, 경영상 발생문제 등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경영활성화나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가맹점을 방문하거나 유선상으로 관련된 지도를 할 수 있음.	가맹본부 부담	문의:
가맹점 사업자 요청시	계약이행, 표준화, 판촉, 경영상 발생문제 등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 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협의 후 개별계약체결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 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함을 원칙으로 함.	가맹점 부담	가맹 본부 (02- 2068 -121 8)

^{*} 가맹점사업자의 요청에 의한 경영지도는 개별 요청사항에 따라 양 당사자의 협의 후 개별 계약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자문의 여부, 내용, 구체적인 절차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신용 제공 등 내역

- 당사는 『준식당』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지 않습니다.
-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 해당 없음.

WⅢ.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 당사는 『준식당』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 훈 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개점 전 교육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개점 후 교육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 귀하가 『준식당』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개점 전 교육	21 일	5,500	최초 계약 시 이수
수시 교육	1 일(2~4h)	실비 발생 시 청구	필요시
특별 교육 1일(2~4h) 가맹점사업		가맹점사업자와 협의 산정	점주요청에 의한 교육
정기 교육 1일(1~3h)		실비 발생 시 청구	필요시

3. 교육 · 훈련의 주체

•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는 가맹점사업자 1인 입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당사와 사전협의한 경우에는 타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1인 이외의다른 직원에 대한 추가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인원 추가에 따른 추가 비용을 당사와 협의하여지불하고 교육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4. 교육 · 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개점이 지연 될 수 있으며 개점 이후 전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에 교육 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가맹점운영권 제한 사유 및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 ∘ 해당 없음.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 해당 없음.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 해당 없음.

<정보공개서 내용문의>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는 당사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239~4241)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1. 재무재표 및 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2. 원부재료 목록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3. 인근 가맹점 현황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인근 가맹점사업자 현황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직영점포함) 10개의 일반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중인 가맹점이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 점 전체 현황을 제공하며, 장래점포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겠습니다.

구분	가맹점명	소재지	연락처	비고
1				
2				
3				
4				
5				
6				
7				
8				
9				
10				

별첨 4.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현황 수령확인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 수령확인서

[*주의 : 성명, 수령일시와 수령 장소 등 반드시 자필기재]

성		명						전	화	번	호	
주		소										
수	령 일	시	20	년	월	일	시	수	령	장	소	
제 : 사	공 받	이 길		"상기	본인은	정보공	공개서를	세	공받	날았.	<u>0</u> 2	확인합니다."

상기 기재사항들은 전부 가맹희망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하여야만 유효합니다.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정보공개서 주요 목차

별첨: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인근 10개 점포 가맹점사업자 현황

-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상기 본인은 '가맹사업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당 가맹사업의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을 정히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정보공개서 수령자 :

(인) 또는 서명

[* 계약자와 수령자가 상이한 경우, 계약자 명의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제출 필요]